

5. 地方稅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5,211號 1996. 12. 31

주 요 골 자

- 가. 가스관·송수관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구축물의 범위에 명시함(영 제75조의 2 제2호).
- 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거용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은 주택건설용토지로 보도록 함(영 제84조의 4 제4 항 제10호).
- 다.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종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업종에 자동차운송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추가함(영 제101조 제1항).
-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주민세 균등함을 비과세하도록 함(영 제130조의 4 제3호).
- 마.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 사업장이 있는 구청별로 각각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점·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이 있는 구청에 일괄납부하도록 함(영 제130조의 5 제1항).
- 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영 별표 제3종 제62호).

개 정 이 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과세대상간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법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지방세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 제1호”로 한다.

제1장 제5절에 제14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4(지방세의 우선)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로 한다.

제73조 제9항 본문 중 “우리나라에 인수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면장 발급일)”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우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로 하고, 동항 단서 중 “우리나라에 인수하지 아니하거나”를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제74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75조의 2 제2호 중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도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 포함) 및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급·배수시설,”을, “저장조등 옥외저장시설, 잔교·도크·조선대·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옥외주유시설·가스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옥외가스충전시설·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및”으로 한다.

제79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부동산”을 각각 “부동산 등”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 중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를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로, “부동산”을 “부동산 등”으로 하며, 동항 제1호 및 제2호 중 “부동산”을 각각 “부동산 등”으로 한다.

제84조의 2 제1항 본문 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 중 “농·수·축산물 판매장용 토지”를 “농·수·축산물 구매·판매시설용 토지”로 하며, 동호 다목 중 “물류시설용 토지”를 “물류시설용 토지 및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집배송단지·집배송센터용 토지”로 하고, 동호 마목 중 “노인복지시설용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용 토지”로 하며, 동호 바목을 삭제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 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 4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

하여진 업무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2호 단서 중 “토지를 제외한다”를 “토지 및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항 제7호 중 “제1호 제2목”을 “제1호 나목”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법 등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 한다.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사택(임대용 사택을 포함한다)·기숙사·합숙소 등 주거용 건축물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 또는 이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토지(착공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토지를 포함한다)와 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 4 제4항 제10호에 후단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동의 건물이 주거용과 주거용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거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

제84조의 4 제4항 제11호 중 “임업협동조합법”을 “임업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항 제13호 봄문 중 “공장의 설립신고·허가·승인 또는 입지지정승인신청서”를 “공장의 설립승인신청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서”로 하며, 동항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제84조의 5 제1항 제8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101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7호 중 “공업발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를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로 하며, 동항 제9호 중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을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고; 동항 제16호 중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박물관·공연장 및 미술관 등”으로 한다.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제102조 제1항 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126조의 2 제5호를 삭제한다.

제130조의 4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제130조의 5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 중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구축물이 있는 경우”를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제75조의 2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이 있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내에서 2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제146조의 3 중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178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4조의 7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제194조의 14 제1항 제1호 중 “시지역”을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으로, “공업단지”는 “산업단지”로 하고, 동항 제4호 중 “사용검사를”을 각각 “사용승인을”, “가사용승인”을 “임시사용승인”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제7호 중 “유통시설용 토지”를 “유통시설용 토지 및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

센터 또는 집배송단지로서 내무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로 한다.

제194조의 15 제1항 제1호 본문 중 “시지역”을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으로,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며, 동항 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제194조의 15 제4항 제3호 중 “염관리법 시행령 제5조”를 “염관리법 제6조”로 하고, 동항 제5호 및 제6호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며, 동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13호 중 “축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을 “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으로 한다.

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재개발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제224조 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2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7조(법인합병의 범위) 법 제28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 내무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합병
2.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간의 합병
3.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축산업협동조합법 · 임업협동조합법 · 인삼협동조합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

별표의 제1종에 제8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2. 방문판매업 · 통신판매업 · 다단계판

매입

별표의 제3종 제62호 중 “무선국”을 “무선국[전파관계법령에 의한 무선국(외국에서 취득한 선박 및 항공기의 무선국에 한한다), 아마츄어국, 어선의 선박국(50와트 이하 무선설비에 한한다), 간이무선국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을 제외한다]”로 하고, 제3종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전자파장해검정

별표의 제5종에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8호 및 제8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
8. 비디오물 감상실업
68. 목욕탕영업. 다만, 제2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7.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제84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경자동차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

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시설대여하는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제7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적용례)
제79조의 3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최초로 대체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① 제

84조의 4(제1항 제1호 본문 후단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의 취득세부터 적용한다.

②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본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건축공사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6조(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130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부터 적용한다.